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안)

의안 번호	128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6월 21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6년 5월 19일 김용석(金勇錫)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1188), 2016년 6월 10일 최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1265) 이상 2건을 제268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(2016.6.21)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민원처리 전담과 민원행정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1부시장 직속 기구인 “신속행정추진단”을 “시민소통기획관”으로 조직 소관을 변경(7.1 일자)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-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, 현 조례상으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 소속 의원들의 예결위 참여가 제약되어 있는 바, 국회 및 다른 시도의회 사례를 참조하여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도 예결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회 내 원활한 정당정치의 회복과 의

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오류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‘신속행정추진단’을 삭제함(안 제33조제1항제2호 자목 삭제).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함(안 제41조제3항 단서)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 제목 “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”를 “(상임위원회의 소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자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파목으로 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”를 “의장과 협의한 후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”을 “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(이하 “비교섭단체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1조제3항 단서 중 “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”를 “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①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아. (생략)</p> <p>자. 신속행정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차.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카.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</p> <p>타.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</p> <p>파.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</p> <p>하.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3.~10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자.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차.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</p> <p>카.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</p> <p>타.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</p> <p>파.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3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1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)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</p> <p>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</p> <p>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</p>	<p>제41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)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</p> <p>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(이하 “비교섭단체”라 한다)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</p> <p>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</p>